

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보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9. 9. 23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9.9.9. 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2019.9.10.

다. 상정일자 : 제233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(2019.9.23.)
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 【제안설명자 : 홍보과장 이문희】

가. 제안이유

우리 구가 제작하는 홍보물의 심의와 보급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홍보물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효과적으로 보급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규정(안 제1조 ~ 안 제2조)
- 홍보물심의위원회(안 제3조 ~ 안 제7조)
- 회의 운영 등(안 제8조 ~ 안 제12조)
- 홍보물의 판매 및 보급(안 제13조 ~ 안 제19조)
- 시행규칙(안 제20조)

3. 검토보고(전문위원 유준상)

○ 조례안은 우리 구가 제작하는 홍보물의 심의와 보급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홍보물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효과적으로 보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는 4장 2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

○ 주요내용으로는

- 제1장 총칙(안 제1조 ~ 안 제2조)

▶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규정함.

- 제2장 홍보물심의위원회(안 제3조 ~ 안 제7조)

▶ 홍보물 제작 및 판매·보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조정하는 홍보물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사항 규정함.

- 제3장 회의 운영 등(안 제8조 ~ 안 제12조)

▶ 회의 소집 및 세부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규정함.

- 제4장 홍보물의 판매 및 보급(안 제13조 ~ 안 제19조)

▶ 판매가격 및 판매방법부터 전시·홍보, 관리·감독까지 홍보물의 판매 및 보급에 관한 전반적 사항 규정함.

- 시행규칙(안 제20조)

▶ 조례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음

○ 검토의견으로는

공직선거법상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금전·물품 등의 제공은 기부행위에 해당되므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 제정 입법체계상 조례를 규정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야 하므로,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보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」의 시행에 필요한 규칙을 새로 제정하기 위해서는 현행 규칙을 폐지하고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- 다만, 홍보물이란 정의가 다양하게 명시된 만큼 종이로 된 홍보물은 환경자원의 훼손과 예산 낭비가 될 수 있어 꼭 필요한 부분만큼만 발행하고, 스마트폰의 발전으로 모든 홍보물은 페이스북, 카카오톡, 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빠르고 신속하게 정보전달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홍보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 : 없음